

1. 자격증(카드형)

나무의사 자격증	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)	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
위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산림청장 직인	

85mm×55mm(백상지 150g/㎡)

< 유 의 사 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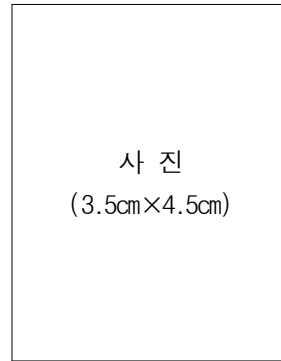
1.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2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, 다목,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.
 - 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
 - 나.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
 - 다.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라. 제1호를 위반하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 - 마.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
 - 바.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 - 사.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
※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2. 자격증(상장형)

나 무 의 사 자 격 증

- 자격번호:
- 성 명:
- 생년월일:
- 근거법령: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



위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 청 장 직인

